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32호

나. 제출자 : 도병두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임산부의 산전,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양육의 질 및 다음 출산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양육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호)

4.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4. 1. 23 개정되어 2025. 1. 24 시행 예정인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 제6호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에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신설 규정함.
-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대체로 비용 지원이 대부분이고 출산 전까지의 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나, 산모의 출산 후 정신건강은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출처 : 질병관리청(국가 건강 정보포털)

1.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모의 약 10%~20% 정도에서 발병되며 대개 산후 4주를 전후로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출산 후 수 일 이내 혹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치료받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1년 넘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방치할 경우 산모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산후 정신병 (Postpartum Psychosis)

산모의 0.1~0.2%에서 나타나며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원과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 수일부터 2~3주 내에 발생하여 극도의 정서불안, 분노 반응, 수면장애, 망상, 혼돈, 주의 집중력 결여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살, 영아살해라는 극단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후 정신병 또는 조울증의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거나 초산인 경우는 산후 정신병의 위험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개정 반영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저출산 문제에 일조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모자보건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10조의5